

2025년도 APEC 협력사업(네트워크) 신규과제 공모

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2025년도 APEC 협력사업(네트워크) 신규 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관심 있는 연구자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.

2025년 7월 30일

<주무부처>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 관 배 경 훈

<전문기관>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홍 원 화

1. 사업목적

- APEC 회원국 간 과학기술 협력 수요를 발굴하고 공통 관심 분야를 탐색하기 위한 APEC 내 석학 초청 라운드테이블 및 APEC 정상회의 후속 행사를 추진하여 한국형 다자 연구 협력 기반 조성
- APEC 회원국 간 소통채널을 구축하고 실무자 간담회, 공동 워크숍 등을 개최하여 우리나라 주도 다자 협력 플랫폼으로써 단계적 발전을 도모

2. 사업내용

- 지원목적 : 한국 최초의 우리 주도 다자간 R&D 프로젝트 운영을 위한 다자간 연구 협력 거버넌스 구축 기반 마련
- 지원분야 : 과학기술정책
- 지원기간/지원규모 : 6개월(2025.10.1.~2026.3.31.) / 총 297백만원
- 선정규모 : 1과제
- 지원내용 : APEC 내 석학 초청 라운드 테이블 및 후속 행사 개최, APEC 회원국과의 과학기술 협력네트워크 구축, APEC 지역 과학기술 협력의제 발굴 및 공동 대응전략 수립 등

구분	주요내용
네트워크 구축	○ APEC 내 석학 초청 라운드 테이블 및 APEC 정상회의 후속 행사 개최 ○ APEC 회원국 내 실무자 간담회, 공동 워크숍 개최 지원 ○ APEC 회원국 내 신규 프로그램 홍보 및 의견 수렴 등
정책연구	○ 국내외 정책, 연구동향 조사를 통한 APEC 지역 과학기술 협력의제 발굴 ○ APEC 지역 내 우수 연구자 및 연구기관 Pool 구축 ○ 국가별/다자간 연구프로그램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방안 모색 등 ○ APEC 지역 국제협력 정책 의제 수립 지원 및 분석보고서 발간 등

3. 신청자격 및 신청제한

□ 신청자격

○ 주관연구기관의 자격

-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

혁신법 제2조(정의) 3. "연구개발기관"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·단체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·단체를 말한다.
가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
나.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(이하 "대학"이라 한다)
다. 「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
라. 「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
마. 「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
바. 「특정연구기관 육성법」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
사. 「상법」 제169조에 따른 회사
아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·단체

시행령 제2조(연구개발기관) ①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2조제3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·단체"란 다음 각 호의 기관·단체를 말한다.

1.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
2. 「민법」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
- ② 연구개발기관의 종류는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.
 1. 주관연구개발기관: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
 2. 공동연구개발기관: 주관연구개발기관과의 연구개발과제협약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분담하여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
 3. 위탁연구개발기관: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의 일부(특수한 전문지식 또는 기술이 필요한 부분으로 한정한다)의 위탁을 그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

○ 연구책임자의 자격

-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 제2조 제3호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에 소속된 연구자
 -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 제6조(연구개발기관의 책임과 역할) 및 제7조(연구자의 책임과 역할)에 의거 요건을 갖춘 자
- ※ 연구과제 수행 기간 중 (정년)퇴직, 이직 등이 예상되어 연구책임자의 자격요건이 상실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, 과제 신청 전 반드시 사전 문의

□ 신청 및 참여 관련 유의사항

○ (참여제한)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중인 자는 신청할 수 없음

- 단, 신청 마감일 전일에 참여제한이 종료된 자는 과제 신청 및 수행 가능
- 신청 후 신규과제 선정 중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, 반드시 전문기관(한국연구재단)에 사실을 알려야 하며 동 과제는 선정평가 및 선정 대상에서 제외

※ 관련 :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 제32조 및 「동법 시행령」 제59조 제1항

※ 국가연구개발사업 신규과제 신청 및 수행을 위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신청 마감일 전날까지 참여제한 기한이 종료되어야 하므로 연구과제 신청 전 반드시 본인의 참여제한 여부확인 요망(<http://www.ntis.go.kr> 로그인 후 확인 가능)

- (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) 본 사업은 '연구과제 수 상한제(3책 5공)'에 해당함
- (차별성 검토)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됐거나 추진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를 대상으로 NTIS 검증 자료 등을 참고하여 과제 평가단이 차별성 검토 실시
 - 기존에 유사과제를 수행하거나 참여하고 있는 경우 신청을 지양하고, 신청하고자 하는 연구계획과 기지원된 국가연구개발과제(타부처 포함)와의 유사성을 과제 신청 전 반드시 개별 확인
 - 기존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와 중복 과제로 판명 시 선정에서 제외
 - ※ 유사과제 검색 방법 : www.ntis.go.kr 로그인 → 과제참여 → 차별성 검토 실시
- (국외 수혜정보 보고) 선정된 연구책임자는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 제7조, 동법 시행령제9조제3항에 따라 협약 시 제출하는 연구개발계획서 내 국외수혜* 현황정보**를 포함하여야 하고, 과제 수행 중 국외 수혜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(권고) 현행화(IRIS 활용)
 - * 국외수혜: 외국 정부·기관·단체 등으로부터 재정적·행정적(연구과제, 인력, 장비, 시설) 지원 및 강의·자문·검직 등으로 대가를 받는 사항(단순 문의·제안·논의 및 종료사항 미포함)
 - ** 지원·지급 출처, 사유, 기간, 내용, 현재 수행중인 연구개발과제와의 관련 여부

시행령 제9조(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의 공모 절차) ③ 연구개발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..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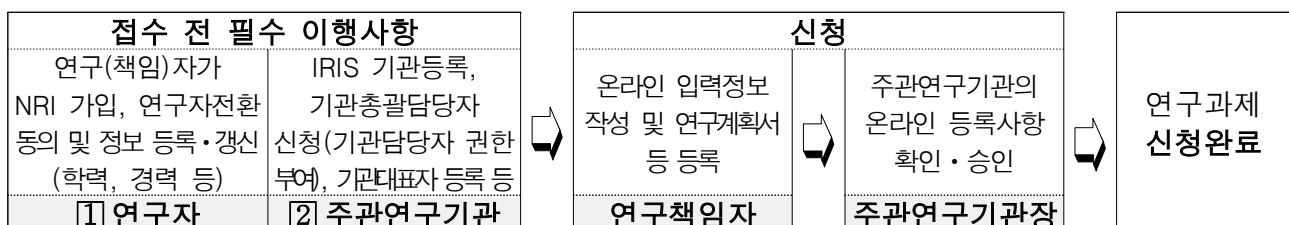
8. 연구책임자가 연구개발기간 동안 외국의 정부·기관·단체 등으로부터 받는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이나 노무 또는 자문 등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관한 사항

- 한국연구재단 지원과제의 신청자 및 수행자는 연구개발계획서 및 단계/최종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생성형 AI 도구를 작성한 경우, 해당 계획서 및 보고서에 AI 도구 사용 내역을 기술(권장)
 - * 「생성형 인공지능(AI) 도구의 책임 있는 사용을 위한 권고사항」 ('24.3, 한국연구재단) 참조

4. 신청방법

□ 신청방법 및 절차

- 2025년도 APEC 협력사업(네트워크)은 기존 한국연구재단의 e-R&D를 대체하여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(IRIS, <https://www.iris.go.kr>)에서 연구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온라인 입력정보 작성 및 연구계획서 등 탑재 후 주관연구기관 확인·승인



※ 접수 전 소속기관의 연구관리 담당자에게 주관연구기관 승인 가능여부를 반드시 확인 요망

▶ IRIS를 통한 과제신청을 위해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이 있으니 과제신청에 문제가 없도록 사전에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※ 세부 내용은 [별첨] 연구개발과제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(KISTEP IRIS운영단), IRIS 회원가입 (연구자 전환) 및 연구자정보 등록 매뉴얼 참조

① (연구자) ① IRIS 회원가입, ② IRIS 내 NRI(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)로 이동하여 연구자전환 동의(국가연구자번호 발급), ③ NRI 내 학력/경력* 및 주요 연구수행 실적** 정보 등록 필수

* 경력정보에서 근무(소속)부서 등록 필수

** 최근 5년간 수행완료 과제, 수행 중/신청 중 과제 목록 작성

※ ① 및 ②: 연구책임자 포함 참여연구자 전원 필수(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의 학생연구자는 제외), ③: 연구책임자만 필수

② (주관연구기관) IRIS 기관등록, 기관총괄담당자 신청(기관담당자 권한부여), 기관대표자 등록 등

※ 기관대표자 및 기관(총괄)담당자도 IRIS 회원가입 및 연구자전환 동의(국가연구자번호 발급)가 필수이며, 대표자 정보 미등록 시 연구자가 과제접수를 완료할 수 없으므로, 반드시 신청기간 시작 전까지 필수 이행사항 조치 필요

<주관연구기관 선택 유의사항> ※ 세부내용은 [별첨] 주관연구기관 선택 및 승인권한 관련 안내 참조

- 과제신청 시 주관연구기관은 <00대학교 산학협력단>이 아닌, <00대학교>로 신청요망

- <00대학교>의 기관정보(기관대표자 등록, 기관총괄담당자 신청, 기관담당자 승인권한 부여 등) 등록 필수

- 승인권한은 산학협력단 기관담당자가 산학협력단 과제뿐만 아니라 본교명(00대학교)으로 신청한 과제까지 모두 승인 가능

※ 현재 <00대학교 산학협력단>으로만 기관정보(대표자 및 기관총괄담당자 등)가 등록되어 있고, 접수마감까지 시간이 촉박하여 <00대학교>로 정보를 변경하여 신청하기가 어려울 경우 <00대학교 산학협력단>으로도 신청가능

▶ IRIS 문의처: IRIS 콜센터 1877-2041 또는 IRIS 홈페이지 사용문의 게시판 활용

○ 과제 접수 매뉴얼 참조 :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(<http://www.iris.go.kr>) 로그인 → R&D 업무포털 클릭 및 접속 → R&D 고객센터 → IRIS 사용 매뉴얼 → [IRIS R&D 통합업무포털-연구자용] 접수 매뉴얼 다운로드

※ 접수 매뉴얼 미숙지로 인한 접수 오류의 귀책은 신청자에게 있음

○ 연구개발계획서의 작성이 완료되면, 화면 우측상단의 ‘최종확인’ 완료 이후 ‘제출’이 가능하고 제출된 연구개발계획서는 추가 수정 또는 삭제 불가

※ 연구책임자 신청완료, 주관연구기관의 검토·승인이 완료되어야 신청이 완료됨

5. 신청기간 및 제출서류

□ 신청기간

구 분	내 용
연구책임자 신청 기간 (신청마감일)	2025.7.30.(수) ~ 2025.8.29.(금) 17:00까지
주관연구기관 검토·승인 기간	2025.7.30.(수) ~ 2025.8.29.(금) 18:00까지
신청 절차	연구자 접수 ▷ 주관연구기관 승인 ▷ 신청 완료

※ **8.29.(금) 18시까지 반드시 연구자 접수, 주관기관 승인이 모두 완료**되어야 함

※ 주관기관 미승인 과제는 미접수로 처리되며, 접수 마감일에는 접속 증가로 인해 범부처 통합연구지원시스템(IRIS)이 원활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마감일 이전 접수 요망

- 연구책임자 : [연구책임자 신청 기간] 내에 계획서 등록(신청완료) 및 기관검토 요청까지 반드시 모두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
- 주관연구기관 : [주관연구기관 검토·승인 기간] 내에 연구자가 신청 완료한 계획서에 대한 검토 및 승인을 완료해야 함 (단, 연구책임자 신청 기간에도 미리 검토·승인 가능함)

□ 제출서류

- 국문 연구개발계획서 ([붙임1] 참조) 1부
- 기타 증빙자료 ([붙임2] 참조) 1부
- 접수일 기준 현재 수행 중인 타 과제 현황 1부 ([붙임3] 참조)

6. 평가체계

□ 평가절차

사전검토	선정평가	사업추진위 심의	최종 선정
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적절성 검토	연구개발과제 발표평가 실시	평가결과 심의 및 보고	평가결과 확정 및 선정 공고
한국연구재단	평가위원회	한국연구재단/ 과기정통부	한국연구재단

- 사전검토 : 전문기관에서 제출서류 구비요건, 신청자격 적합여부 등 검토
- 선정평가 :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이 연구진 발표 후 질의응답을 거쳐 선정 대상과제 추천
- 최종선정 : 사업추진위원회 심의 후 평가결과 최종 확정 및 선정결과 공고

□ 선정평가 지표

구분	평 가 항 목	배점
연구계획	○ 연구목적과 연구내용의 적절성 ○ 연구개발과제의 창의성 및 수행 계획의 충실성 ○ 연구방법론(자료수집 및 분석 등)의 적절성	40
연구수행	○ 사업추진 및 관리 방안의 적절성 - 사업 추진 일정 및 계획의 적절성 - 데이터 구축 및 운영의 체계성 및 충실성 - 연구개발비 편성의 합리성 등	20
연구자(팀)의 역량	○ 본 사업수행을 위한 연구자(팀)의 전문성 - 수행조직 구성의 적절성 및 참여인력의 전문성, 적정성 - 해당 사업에 대한 전문지식 보유 및 유사 사업 수행실적 등	20
기대효과	○ 기대성과 및 활용 방안의 적절성	20
합계		100

※ 상기 평가절차 및 평가항목은 추진 과정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

7. 향후 일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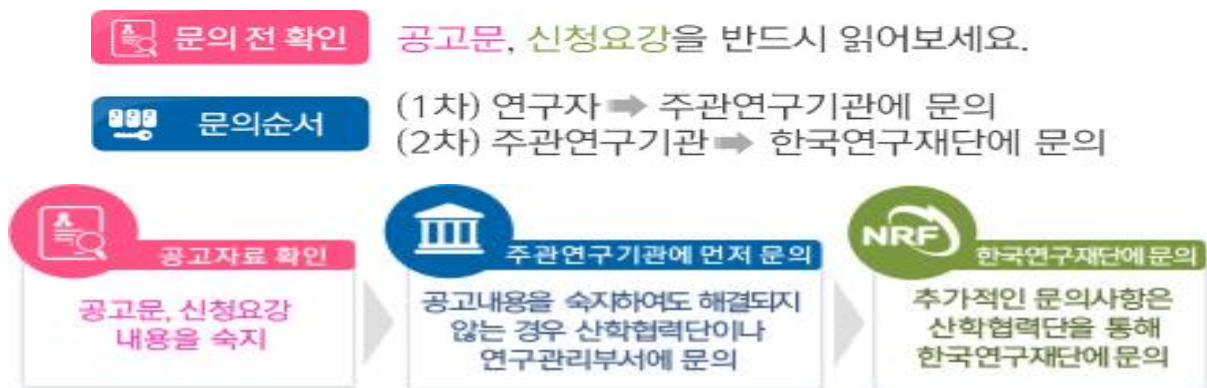
- 2025. 8.29. 접수 마감 ※ 주관연구개발기관 승인 포함
- 2025. 9월 선정평가
- 2025. 10.1. 연구개시 (예정)

※ 상기 일정은 사업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

8. 문의처

□ 문의 절차

“문의 전화 폭주로 전화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,
반드시 공고문 및 FAQ 확인 후 연구 수행기관을 통하여 질의 요망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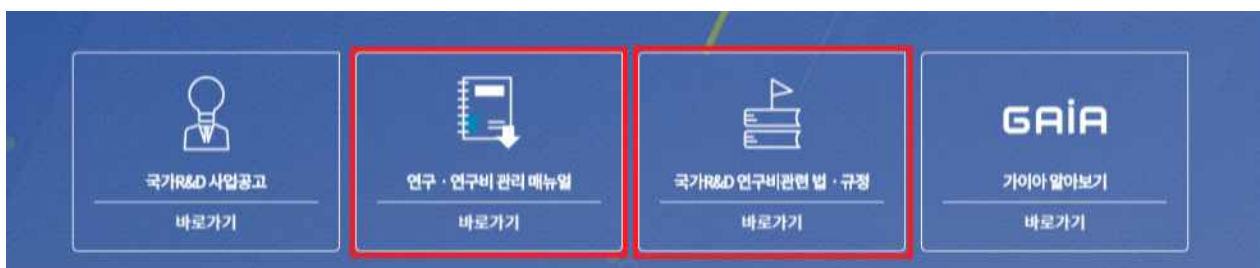


□ 공고문 및 양식 확인 방법

- 공고내용이 수정되는 경우 아래 사업 공지사항 메뉴를 통해 수정사항이 게시되므로 지속 확인 필수 (수정사항을 개별 안내하지 않음)
- 한국연구재단 (<https://www.nrf.re.kr>) → 사업안내 → 사업공고 → 사업공지
-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(<https://www.iris.go.kr>) → 사업정보 → 사업공지 → 사업공고

□ 관련 법령, 규칙, 매뉴얼 등 조회 방법

- 범부처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(<http://gaia.go.kr>) 접속
- 법·규정·규칙 : 「자료실」 → 「국가R&D연구비관련 법·규정」 → '공통 법·규정' → '국가연구개발혁신법' 관련 확인
- 연구·연구비 관리 매뉴얼: 「연구·연구비 관리 매뉴얼」 클릭



□ 문의처

- (사업문의) 한국연구재단 국제협력본부 호라이즌유럽다자협력팀
 - 이태성 연구원 : (☎) 02)3460-5733 / (E-mail) taesunglee@nrf.re.kr
 - (시스템문의) IRIS 콜센터 1877-2041 또는 IRIS 홈페이지 사용문의 게시판 활용
 - 과제 접수 매뉴얼 참조 :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(<https://www.iris.go.kr>) 로그인
→ R&D 업무포탈 클릭 및 접속 → R&D 고객센터 → IRIS 사용 매뉴얼 →
[IRIS R&D 통합업무포탈-연구자용] 접수 매뉴얼 다운로드
- ※ 접수 매뉴얼 미숙지로 인한 접수 오류의 귀책은 신청자에게 있음

- 붙임 1. 연구개발계획서 양식 1부
2. 기타 증빙자료 양식 1부
3. 접수일 기준 현재 수행 중인 타 과제 현황 양식 1부

연구과제 제안서

1. 연구 배경 및 연구 목적	○ 기술패권 경쟁 장기화 및 경제안보 리스크 확대 등 글로벌 난제 대응을 위한 글로벌 과학기술 국제협력의 필요성이 증대됨 ○ AI, 바이오, 반도체 등 분야에서 기술 주도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다자 플랫폼을 통해 영향력을 확보해야할 필요가 있음 ○ 따라서, 우리나라 주도 다자간 R&D 프로그램 기획하여 역내 우수 연구 기관과의 국제협력 R&D를 추진, 과학기술역량 제고 및 글로벌 문제 해결에 기여해야 함 ○ APEC 정상회의 개최를 계기로 구축한 전문가 Pool을 활용하여 네트워킹 행사를 개최하고 이를 통해 한국 최초의 우리 주도 다자간 R&D 프로젝트 운영을 위한 다자간 연구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
2. 연구 내용 및 범위	○ APEC 회원국과의 석학 초청 라운드 테이블 및 후속 행사 개최 - APEC 회원국 간 과학기술 협력 수요를 발굴하고 공통 관심분야를 탐색하기 위한 APEC 국가를 중심으로 신규 국제행사 및 다자간 후속 국제네트워킹 행사를 추진하여 한국형 다자간 연구 협력 기반을 조성함 ○ APEC 회원국과의 과학기술 협력 네트워크 구축 - 회원국 연구기관, 정부 간 소통채널을 구축하고 실무자 간담회, 공동 워크숍 등을 진행하여 다자 협력 플랫폼으로의 단계적 발전을 도모함 ○ APEC 지역 과학기술 협력의제 발굴 및 공동 대응전략 수립 - APEC 지역에서 내 과학기술 현안 분석, 미래 협력분야를 도출하여 회원국 간 공동연구를 촉진할 수 있는 전략적 협력의제 발굴 - 부처의 국제협력 정책 의제 수립 지원 및 분석보고서 발간 등 - APEC 사업 운영에 관한 이슈 대응 및 유관기관 지원 등
3. 기대 효과 및 활용 방안	○ APEC 과학기술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국제 위상 강화 ○ 해외 우수 연구기관과의 연구 협력 기회 발굴
4. 총 연구비 / 연구기간	○ 총 297백만원 / 2025.10.1. ~ 2026.3.31.(총 6개월)